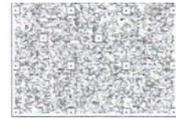


(주)세경복스는 본 출판사의 저작물들을 불법으로 스캔하여 PDF 제작, 공유, 판매 및 유통한 ○○○씨를 적발하고, 2024년 12월 24일자로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. 광주동부경찰서의 수사 결과, 피의자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. (참고: 통보공문 2025.3.13.)

저작권 침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, 이는 형사 및 민사상의 심각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추후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수험생활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(참고)

공인회계사법 제4조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를 보면 “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”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
## 광주동부경찰서

제 [REDACTED] 호

2025. 3. 13.

수신 : 주식회사세경복스 귀하

제목 : 수사결과 통지서(고소인등·송치 등)

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접수일시	2025. 1. 16.	사건번호	[REDACTED]
죄명	저작권법위반		
결정일	2025. 3. 13.		
결정종류	1. 송치 (○) : 광주지방검찰청 (☎:1301) 2. 이송 ( ) : (☎:) 3. 수사중지 ( )		
주요내용	별지		
담당팀장	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[REDACTED] [REDACTED]		



### 【 주요내용 】

본 사건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**저작권법위반 혐의 인정되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결정**하였습니다. 추후 문의사항 있을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